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낙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낙시접근권 보장 관련 사항 추가>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관련 사항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강명구 의원 등 12인

2. 제안일: 2026. 4. 9.

3. 회부일: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역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Ⅲ. 검토의견

1.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관련 사항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낚시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장애인의 낚시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낚시에 접근하거나 낚시터 및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장에 관한 사항</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u><신설></u>	④ ~ ⑦ (현행과 같음) <u>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낚시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3조에 따르면¹⁾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에서는²⁾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⑦ (생략)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은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①더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②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③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④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의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으나,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4개 분야 10개 과제) >

안전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야간기준 보완, 안전교육 강화 등 ②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 낚시 전용선박 개발·도입 추진 ③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GIS연계를 통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정책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④ 어업인·낚시인 갈등 최소화 -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면허제 검토 ⑤ 낚시터 이식승인 어종 확대 - 고수온기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 확대 ⑥ 낚시 통제구역 관리 개선 - 지정·해제시 의견수렴 및 주기적 재검토
문화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⑦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 추진 - 쓰레기 실태조사 및 캠페인 추진 ⑧ 낚시 여가 특별구역 등 지정 - 낚시여가구역 지정 및 복합타운 조성 추진	산업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⑨ 민·관 상생 협력사업 추진 -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시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⑩ 낚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자료 : 해양수산부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 정도로,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명으로 추산³⁾되며 전체 낚시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낚시 접근권 확보와 관련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낚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낚시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시행되는 것으로,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3) 2024년 기준 비장애인 낚시인구 1,012만명, 장애인 낚시인구 30.5만명, 대한장애인낚시연맹 제출

기본계획 내용은 낚시 산업, 낚시의 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 거시적 사항을 규정하고 낚시인에 대해서는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⁴⁾ 장애인 낚시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현행법 제45조에서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인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낚시에 접근하거나 낚시터 및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개정안은 실태조사 근거를 기본계획에 관한 제43조의 한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그 방법·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⁵⁾하고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662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⁶⁾.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19
